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제처의 ‘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 필요’에 따른 법령 일괄 정비 추진으로 「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. 이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·판매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하고 있는 바,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“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”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2 개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의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항을 “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”를 “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6. 0
0. 00.>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
가.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1호	허가 취소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5조제1항제2호	허가 취소
다.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3호	영업정지 3개월
라.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	법 제5조제1항제4호	영업정지 3개월
마.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(같은 조 제5호의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	법 제5조제1항제5호	허가 취소
바. 제조·판매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기재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6호	영업정지 1개월
사. 제조·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7조	허가 취소
아.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·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8조제1항	허가 취소
자.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법 제8조제2항	허가 취소
차. 지정된 기일 내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0조	영업정지 2개월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3. 4. 25.> 행정처분 기준(제6조 관련) 2. 개별기준 <table><tr><th>위반행위</th><th>해당법조문</th><th>행정처분기준</th></tr><tr><td>가.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5조제1항제1호</td><td>허가 취소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	가.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1호	허가 취소	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6. 00. 00.> 행정처분 기준(제6조 관련) 2. 개별기준 <table><tr><th>위반행위</th><th>해당법조문</th><th>행정처분기준</th></tr><tr><td>가. <u>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</u>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</td><td>법 제5조제1항제1호</td><td>허가 취소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	가. <u>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</u> 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1호	허가 취소
위반행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								
가.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1호	허가 취소											
위반행위	해당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									
가. <u>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</u> 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조제1항제1호	허가 취소											